

종합무역상사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법인세 추징 사례를 통한 합병 회계 및 세무의 문제점 분석

이만우* · 심준용** · 윤용석***

〈요 약〉

본 연구는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공시된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사례 중 합병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회계학적 및 법인세 과세 측면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효성의 효성물산 합병사례와 관련해 당시의 합병회계준칙과 법인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의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효성이 합병한 효성물산은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장부상 약 1,340억 원의 순부채 상태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차이로 산정되는 영업권은 장부상 1,368억 원이었다. 그러나 효성물산의 장부에는 분식회계로 인한 가공자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며, 가공자산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병 당시 약 6,044억 원의 순부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이후 효성의 재무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8년 합병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반적인 매출액이 합병 당시 대비 약 16% 증가하였으며, 또한 효성물산과 관련한 무역부분에서 합병 당시 대비 3년 만에 약 19%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익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1998년 당시에는 정책적인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외환위기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 이전에 효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해외 지사의 자산 및 고객 정보 등 영업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계기준 상 이러한 무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합병 당시 효성물산의 재무상태표 상 계상되어 있던 가공자산은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업망이라는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영업망 성격의 자산이 합병회계에서 효성물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함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반영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합병 과정에서 인식 가능한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법인세법에서 이에 대한 상각비를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leemm@korea.ac.kr, 주저자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jyshim@mju.ac.kr, 교신저자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hwantasi@hnu.kr, 공동저자

본 연구는 중요한 공시사항 중 하나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추정세액의 규모와 관련하여 회계학적 원리와 세법과의 괴리에 대한 분석을 처음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합병, 영업권, 세무조사 추정세액, 매수법

I. 서 론

본 연구는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공시된 세무조사 추정세액의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사례 중 합병회계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 회계학적 및 법인세 과세원리 측면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효성(구, 주식회사 효성T&C,¹⁾ 이하 효성이라 함)이 효성물산을 합병한 이후 비용화한 자산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그 비용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세무조사 추정세액과 관련하여 당시의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을 검토하고 과세논리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합병회계준칙 제정으로 합병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합병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었으며, 1998년 말 개정을 통해서야 합병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됐다. 또한 합병회계준칙 역시 회계처리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영자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초 새롭게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합병은 개정 기준 적용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거래의 추정세액이 세무조사 결과 부과됐다. 그 이후 납세자인 효성과 과세당국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2013년 이후 2014년부터 진행된 1심 소송에 대해서는 7년 만에 선고가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인용과 기각이 나누어졌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항소함으로써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그 결과는 외환 관리 등 경제운용 실패가 초래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합병절차의 회계 및 세법 적용에 대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당시의 합병회계준칙과 법인세법의 내용을 통해 합병의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분석한다. 효성이 합병한 효성물산은 당시 완전자본잠

1) 1966년 동양나이론으로 설립되었다가 1996년 사명을 효성T&C로 변경하였다. 이후 1998년 9월 15일 다시 상호를 주식회사 효성으로 변경하면서 1998년 11월 중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효성물산을 합병하였다. 현재의 효성티앤씨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효성에서 섬유/무역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식 상태로 장부상 약 1,340억 원의 부(負)의 순자산(이하 ‘순부채’라 함) 상태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분식회계로 인한 가공자산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약 6,044억 원의 순부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유한책임이 기본인 주식회사 형태의 상장기업 주가는 부(-)의 금액이 될 수 없기에 당시의 주가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계산하여 효성은 액면금액 기준 약 38억 원(시가 기준 약 6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발행하여 합병대가로 교부하였다.

이 경우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차이로 결정되는 영업권은 장부상 1,368억 원, 가공자산을 제외한다면 6,071억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합병회계준칙에서 영업권은 5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선택에 따라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전액 비용화되는 동시에 손금으로 인정될 사항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공자산에 대한 상각은 부인될 수밖에 없고 4,703억 원에 해당하는 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당시의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치열한 의견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합병 이후 효성의 재무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8년 합병으로 인해 한꺼번에 증가한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반적인 매출액이 합병 당시 대비 약 16% 증가하였다. 또한 부문별 정보에서도 효성 물산과 관련한 무역부분에서 합병 당시 대비 3년 만에 약 19%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영업손익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그 결과 무역부문에서의 매출이 효성 전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약 24%에 도달하였다. 이는 1998년 당시에는 정책적인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렸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효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해외 지사의 자산 및 고객 정보 등이 영업망으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계기준 상 이러한 무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합병 당시 효성물산의 재무상태표 상 계상되어 있던 가공자산은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업망이라는 무형자산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영업망 성격의 자산이 합병회계에서 효성물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함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반영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합병 과정에서 인식 가능한 무형자산인 영업권이므로 법인세법에서 이에 대한 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한정적인 자료와 1998년 당시의 기업 공시자료만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일부 금액과 서술에 있어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중요한 공시사항 중 하나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추정세액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의 기본이 되는 회계학적 원리와 세법과의 괴리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회계 및 세법운

영의 마찰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한다. 제 III 장에서는 합병회계와 영업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 IV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례가 발생한 당시의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을 이용하여 사례의 본질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은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연구배경 및 연구사례

1. 연구배경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과 함께 경제주권이 제약됐던 외환위기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왔다. 한보와 기아 등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대기업이 먼저 쓰러졌으며, 치솟은 금리와 환율로 인해 많은 기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경제개발과 함께 수출시장 개척에 앞장섰던 종합무역상사도 대부분 위기에 봉착했다.

그 중에서도 부채비율이 높았던 대우그룹이 먼저 위기를 맞았다. 연리 30%가 넘는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 가면서 2년 넘게 버텼지만 결국, 1999년 8월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당시 부채비율 200%를 맞추도록 압박하던 정부가 투신사의 막대한 대우채 인수는 방관하고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간 빅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대우그룹은 해체되고 말았다.²⁾ 금융감독기구는 대우그룹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에 나서 김우중 회장과 임직원을 기소했고 징역형과 함께 18조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된 종합무역상사 회계문제가 많이 지적됐는데 계속기업을 전제로 영업망을 유지하는 종합무역상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렵고 국내외에 보관 중인 상품 등 재고자산을 제값을 받고 처분할 길이 막힌다. 종합무역상사가 보유한 영업장 시설 등 유형자산도 폐기물로 전락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회계분식으로 분류해 추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후 2003년에는 선경그룹 시절 종합무역상사를 이어받은 SK글로벌 분식회계로 그룹 총수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우그룹과는 달리 정상 영업 중에 분식회계가 적발됐는데 은행 채무를 숨기고 손실을 축소하는 등 변칙이 자행됐지만, 근본 원인은 종합무역상사 영업망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허약해진 경영권을 노리고 해외펀드 소버린이 지주회사인 SK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 경영권을 위협했고 주가가 치솟자 전량 매도해 철수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2) 이만우는 1999년 10월 12일자 조선일보 논단 ‘김우중이 사기꾼이라고’에서 대우그룹의 과감한 구조조정 부족과 정부의 부채비율 200% 규제 및 무리한 빅딜 유도가 문제를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했다.

챙겨갔다.³⁾

2013년 주식회사 효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문제 역시 그 실질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 처리를 위한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효성그룹의 종합무역상사였던 효성물산은 재무적으로 곤궁에 처한 상태였다. 다음의 <표 1>은 효성물산의 합병기일인 1998년 11월 30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199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손익계산서를 보여준다. 1998년 효성물산은 약 2,51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면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340억 원으로 감소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 또한, 부채 총계가 1조 239억 원임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 합병신고서에 의하면 1997년 말 현재 단기차입금이 약 5,109억 원, 회사채가 약 1,253억 원이었으며, 연이자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1998년 손익계산서에서 이자비용을 포함한 영업외비용은 매출액의 약 19.7%에 달하며, 판매관리비의 3배에 달하는 3,007억 원으로 보고됐다.

<표 1> 효성물산주의 합병 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효성물산(주) 합병 전 대차대조표		효성물산(주) 합병 전 손익계산서	
유동자산	729,429	매출액	1,529,619
고정자산	160,412	매출원가	1,445,297
자산총계	889,841	매출총이익	84,322
유동부채	960,425	판매비와관리비	100,516
고정부채	63,162	영업손익	(16,194)
이연부채 ⁴⁾	291	영업외수익	66,285
부채총계	1,023,878	영업외비용	300,685
자본금	48,205	경상손익	(250,594)
자본잉여금	67,763	특별이익	0
이익잉여금	(248,843)	특별손실	1,170
자본조정	(1,162)	세전손익	(251,764)
자본총계	(134,037)	법인세등	0
부채와자본총계	889,841	당기순손익	(251,764)

3) 이만우는 2003년 3월 19일자 국민일보 경제시평 ‘SK분식회계의 교훈’에서 SK글로벌 분식회계는 10여 년 동안 계속 누적됐고 종합무역상사 업무와 관련해 발생된 부채를 숨긴 것으로 분석했다.

4) 실제 합병회계에서는 해당 이연부채를 제거한 후의 부채 1,023,588백만원을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이는 효성의 1998년 사업보고서 상 감사보고서 주석 22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이연부채를 제거한 사유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재무지표와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보면, 효성물산은 현실적으로 회생이 쉽지 않았기에 효성그룹에서는 법정관리를 통하여 효성물산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효성물산이 청산이 된다면 채권 은행 및 채권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밖에 없었으며, 동시에 효성물산이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던 영업망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한일은행 등 주거래은행에서는 정부방침을 근거로 하여 효성물산이 정리될 경우에는 효성을 비롯한 관계사들에 대하여 여신을 중단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효성그룹에 계열사 중 한 회사가 효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종합무역상사의 영업망을 보존하는 동시에 채권 은행의 손실까지도 보존하기 위하여 계열사인 효성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효성물산을 합병하게 되었다. 합병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당시의 회계기준과 실무관행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효성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3년 10월 10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손금과다 산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인 등의 명목으로 약 3,652억 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⁵⁾⁶⁾ 효성이 부과받은 추징금의 규모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세무조사 추징내역 중에서 3번째로 큰 금액이다.⁷⁾ 이에 대해 효성은 우선 추징금을 납부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반영한 후⁸⁾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큰 규모의 세무조사 추징세액 부과가 효성과 효성물산의 합병에 기인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해당 합병이 이루어진 1998년 당시의 합병회계처리를 분석하고 국세청의 법인세 결정과 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 검토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5) 2013년 9월 27일 공시된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효성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사항

6) 2013년 10월 29일 공시된 벌금 등의 부과 : 추징금, 당시 기준이 되는 자본총액은 3조 141억 원으로 추징금의 규모가 자본총액의 12%에 달한다.

7)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직전 보고기간 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을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벌금·과태료·추징금·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공시의무가 있다.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세무조사 추징세액 공시사항을 수작업으로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에 대한 공시는 2022년 1월 31일 현재까지 총 378건(기재정정 및 자회사에 대한 중복 공시 포함)이 있었으며, 이 중 추징세액의 규모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2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단 4건이었다. 효성보다 더 큰 규모의 추징세액은 2000년 5월 10일 기아(전 기아자동차)에 부과된 3,725억 원과 2007년 7월 13일 국민은행에 부과된 4,420억 원의 2건뿐이다.

8) 2013년 9월말 기준 분기검토보고서 상 효성의 자산총계는 14조 3,350억 원이었으며, 자본총계는 2조 7,748억 원으로 법인세 추징액이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후의 금액이다.

2. 연구사례

가. 효성의 1998년 합병 경과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합병 사례는 효성이 동일 기업집단(효성그룹)에 속해 있던 효성물산을 흡수합병한 사례이다. 효성은 유사사업부문 통폐합, 유망사업부문의 집중육성, 경영관리의 효율화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여 세계일류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명목으로 1998년 11월 중 효성물산, (주)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주) 등 3사를 흡수합병하였다. 그러나 그 실질은 앞서 연구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래은행과 정부의 요청에 의한 정책적 관점이 반영된 합병이었다.

주요 경과 내역에 의하면 1998년 7월 31일에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1998년 9월 15일에 시행하였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998년 9월 15일부터 1998년 10월 7일까지였으며, 합병기일은 1998년 11월 17일이며, 합병교부주식의 상장일은 1998년 12월 14일이었다. 최대주주는 조석래 회장으로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효성 발행주식총수의 28.57%와 효성물산 발행주식총수의 11.99%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합병을 통하여 효성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2조 8,715억 원과 2조 4,2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권 1,368억원이 계상되었다. 효성은 효성물산과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 1,368억 원을 향후 회계연도의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1998년 중 전액 상각하였다.⁹⁾

합병비율(피합병회사 발행주식 1주당 교부되는 합병회사의 주식 수)은 효성 대 효성물산이 1대 0.07864로 산출되었다. 이는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해서 소급한 1개월 평균 증가, 1주일 평균 증가, 최근일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증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이 합병을 통해 효성이 효성물산에서 승계 받은 자산은 앞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합병 당시 8,898억 원이었다. 그러나 세무조사 불복과 관련한 판결에 의하면 이 중 4,703억 원은 실재하지 않는 가공자산이 효성물산의 분식회계로 계상된 금액이었고 실재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4,195억 원(=8,898억 원-4,703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효성은 6,044억 원에 해당하는 순부채를 승계하는 대가로 액면 약 38억 원, 시가 약 61억 원(=기준주가 8,100원×756,287주) 상당의 합병신주를 지급한 것이다. 이 합병에 따라 효성의 발행주식수는 8,222,382주에서 19,838,622주로 증가하였고, 자본금은 411억 원에서 99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나. 효성의 세무조사 및 불복 경과

효성은 2013년 중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3년 10월 중에

9) 효성의 1998년 말 기준 사업보고서

3,652억 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효성은 2013년 3분기 검토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보고기간후 사건으로 해당 추징금을 법인세비용으로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표 2>에서처럼 2013년 손익계산서에 3,23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다. 2011년부터 3개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년 안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세전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법인세비용이 당기순손익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효성의 주가 역시 큰 영향을 받았다. 다음 <표 3>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특히 세무조사 사실이 공시된 이후와 추징금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5 영업일 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 효성의 2011년~2013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매출액	9,067,386	9,284,877	9,283,305
매출원가	(8,041,493)	(8,376,956)	(8,255,816)
매출총이익	1,025,893	907,921	1,027,489
영업이익	244,852	185,450	285,058
세전순이익	130,197	253,402	155,997
법인세비용	(454,140)	(60,978)	(47,952)
당기순손익	(323,943)	192,424	108,045

<표 3> 효성의 세무조사 관련 사건일 이후 5영업일 간 주가 추이

사 건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기간 수익률
2013-09-27 세무조사 공시	71,700	69,400	68,000	68,000	65,900	-8.2%
2013-10-29 추징금 공시	72,500	71,600	73,600	73,300	74,300	2.5%
2013-11-14 분기보고서 공시	74,800	74,200	74,000	73,800	72,600	-2.9%
2014-02-19 잠정실적 공시	69,900	69,900	70,800	72,100	72,700	4.0%
2014-03-31 사업보고서 공시	75,900	75,900	73,400	73,400	72,500	-4.5%

법인세 추징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효성이 부실자산을 감가상각비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했음을 가장 큰 이슈로 지적하였다. 해당 부실자산은 합병되기 전 효성물산이 분식회계를 통해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던 4,703억 원을 의미하여, 효성은 합병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은 부당함을 이유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추징액과 가산세를 부과

였다.

효성은 이와 같은 법인세 추징에 불복하여 2014년 초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년 중 해당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또한 심판청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2014년 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의 결과가 2021년 2월 중 선고되었다. 효성이 일부승소하기는 하였으나, 부실자산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다시 항소를 하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III. 선행연구 검토

1. 합병회계기준 관련 연구

우리나라는 합병회계에 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로서 1986년에 「합병회계준칙」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 준칙은 합병회계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합병회계에 있어 회계이론을 반영하는 대신 상법적인 관점을 반영했다는 점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김주택 1999 ; 신현걸 2004). 예를 들어, 이광재(1998)는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합병거래를 회계이론에 입각하여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영업권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상각기간을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 승계 자산, 부채의 시가평가원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박성배 등(1999)도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의 과세문제, 청산소득 계산 시 공정가치 평가의 문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 이월결손금 승계의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 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의 경우, 영업권의 본질이나 개념, 평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5년 내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는 규정만 존재하였다(조문균 2008). 이에 기존의 합병회계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99년에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었다.

개정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은 국제회계기준 제22호(IAS No.22)와 미국 규정인 APB Opinion No.16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개정 전 기준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합병의 형태를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으로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도록 하였고, 적용 범위를 합병뿐만 아니라 영업양수도, 주식인수 등 실질적으로 기업결합에 해당되는 거래로 확대하였다. 동 준칙에서 영업권은 매수법에 따른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으며, 매수원가 중 피매수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기

업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한다. 이 또한 단순하고 개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실무적으로 영업권을 평가, 측정하는 등의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조문균 2008). 또한 합병 관련 세법규정이 기업회계와 불일치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신현걸 2004 ; 신현걸과 정재연 2005). 예를 들어, 김진수와 황국재(2001)는 동 회계처리준칙과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의 제 법규와의 조화 방법, 매수법 단일 사용 방안, 취득한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인식, 평가의 구체화 방안, 합병관련 세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합병회계기준에 대한 미흡성, 복잡성에 대한 문제점들과 관련 제규정과 의 부조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그 이후 선행연구들에서는 영업권 에 대한 세제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2. 영업권 관련 선행연구

가. 영업권의 개념

영업권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법학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개념은 모호하여 대법원 판례에서조차 확인할 수 있는 영업권의 개념 및 구체적인 인식, 평가가 서로 합치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 이다(김현동 2011). 회계학 측면에서도 사업의 형태와 조직이 변화됨에 따라 영업권의 개념과 본질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기에 이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영업권이라는 용어는 문헌상 영국에서 1571년부터 처음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대 부분 영업 양도 시 유형재산에 대한 가치액에 추가로 영업권이라는 별도의 평가액을 가산하여 양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부터 영업권이 인식되었다(이우택 2003). 그 후 사회가 발달하면서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지고,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영업권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김현동 2011). 영업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데, 이우택(2003)은 영업 권 개념의 유형을 초과이익개념(excess earnings concept), 잔여개념(residuum concept), 역동적 공개조직 가치개념(dynamic open system value concept)으로 구별하여 서술하였고, 김권중(2004) 은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종합평가접근법(master valuation approach)과 초과이익할인법(excess earnings approach)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김현동(2011)은 초과이익설(excess earnings concept), 종합평가설(master valuation approach), 시너지효과설(synergy effect approach), 세 가지의 학설 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문승석(2016)은 초과이익개념과 잔여개념으로만 구분하여 서술 한다. 각 선행연구에서 조금씩 다르게 구분된 학설을 설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권의 평가방 법 역시 다르게 결정되므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초과이익개념의 경우 회계학 부문에서 영업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로 일찍부터

자리 잡았으며, 이에 따르면 영업권은 미래 초과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 또는 초과이익(excess earnings)을 자본환원율로 할인한 자본환원가치로 표현된다. 여기서 초과이익은 동종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기대이익을 뜻하나, 미래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의 측정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영업권을 추가적 이익의 원천 등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이우택 2003).

잔여개념에 따른 영업권은 초과이익개념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초과이익개념의 경우 영업권에 공헌하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별적인 요소들의 특성이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영업의 양도 및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영업권은 결국 지급대가의 총액과 직접 평가가 가능한 기업 순자산의 현재가치 합의 차이로 규정된다(이우택 2003 ; 노직수 2004 ; 문승석 2016). 이러한 차액개념의 영업권은 개별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사후적으로 조정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Gyntner 1969).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잔여개념에 따른 영업권의 개념은 종합평가설과 같은 의미로 병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권중(2004)은 종합평가접근법에서 매수영업권을 측정하는 방법이 매수대가에서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현동(2011)은 상기의 잔여개념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설명을 종합평가설로 동일하게 서술하면서, 잔여개념에 따른 영업권은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 일 뿐 개념에 대한 학설은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시너지효과설의 경우, 기업조직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영업권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두 개별 기업가치의 단순 합보다 두 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조직되었을 때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시너지효과설에 기반하여 영업권을 설명하고 있다.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피취득기업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과 관련이 없다(김현동 2011). 이와 유사하게 조직가치 개념에 따른 영업권은 조직의 개별자산과는 다르게 기업실체조직이 단순한 조직집합 이상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 기반하며, 기업가치의 실질이 되는 영업권을 기업과 환경 간 역동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 1998년 합병 당시의 영업권 관련 규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합병 거래가 이루어진 1998년 당시에 존재하는 규정은 1986년에 제정된 합병회계준칙이었으나, 동 준칙에서는 영업권의 인식, 평가에 대해 매우 단순하게 정하고 있었고, 영업권의 본질, 개념, 측정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렇기에 영업권을 식별불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단순히 차액개념에 의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세법이나

상법 역시 영업권의 상각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권의 개념,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를 발생시켰다(조문균 2008).

이광재(1998)에 따르면 1998년 당시의 세법 상 영업권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취득한 가액”으로 정의된다. 다만 1997년에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을 합병차손으로 보고 손금을 부인하도록 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이 폐지됨으로 인해, 초과이익개념에 합치되는 영업권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도 합병기업의 자산으로 기록이 가능해졌고, 그 상각비용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당시 대부분의 합병기업이 승계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영업권을 과대계상하고 조기에 상각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영업권과 합병차손의 구분이 곤란하여 합병대가가 장부상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권을 인식하고 있었다.

박성배 등(1999)도 영업권과 합병차손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합병차손에 대해 당시 법인세법에서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업권과 합병차손의 문제는 합병의 실질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어야 함을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매수법에 따른 합병인 경우 피합병회사의 승계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되기에 피합병회사에 결손금이 있더라도 합병대가가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기업의 가치가 개별자산 평가액의 단순합보다 큰 가치를 갖게 된다는 일종의 시너지효과설에 기반하여, 이에 따라 비록 휴업상태거나 결손누적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라도 초과지급대가가 있으면 이를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술하였다. 채병완(2004)도 조세효과 측면에서 영업권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합병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인정된다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조문균(2008) 또한 합병차손과 영업권의 혼동에 관해 서술하였다. 합병차손이 상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정의되고 있지 않으며, 개념상 합병차손과 영업권은 다르지만, 실무적으로 합병차손과 영업권이 혼동되어 있어 이를 구분해 내기 어려움을 서술한다. 합병회계준칙 역시 매수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매수대가가 매수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모두를 영업권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사실상 합병차손과 영업권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19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대법원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93 판결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합병법인이 피합병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이 영업권의 대가이며,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중교 2020). 종합하면, 영업권의 개념 및 측정방법이 불명확했던 당시 규정 아래에서 잔액개념에 따라 합병차손이 영업권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업권 관련 불명확성에 기반한 문제는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여러 연구들에서 비판이 지속되었다. 김주택(1999)은 법인세법에서 영업권에 대한 평가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합병 관련 세무처리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박수금(2004)은 실무적으로 영업권이 잔여 개념에 따른 초과지불대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현동(2011) 또한 법인세법에서의 영업권의 개념 등이 분명치 않아 실무상 혼란과 납세의무자와 과세자 간 다툼을 야기함을 서술하였고, 문승석(2016)은 과세당국이 2011년 이전 합병 당시의 영업권에 대해 뒤늦게 과세하여 조세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영업권 개념에 대한 통일성과 세법상 영업권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IV. 합병회계에 대한 검토

1. 매수법과 지분풀링법

기업의 합병 거래를 회계학 관점에서 검토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크게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병을 매수법으로 처리하는지 지분풀링법으로 처리하는 지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하에서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에 대해 각각 간단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살펴보고 그 이후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에 대한 기준 검토를 통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가. 매수법

매수법에서는 합병을 특별한 형태의 교환거래로 간주하여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합병당사자간에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자산, 부채 및 지분을 교환하는 거래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취득한 순자산에 대해 새롭게 원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 당시의 현행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배분되는 반면, 합병회사는 존속하면서 그 영업활동의 본질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유지한다. 매수법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수법 사례]

(주)존속은 (주)소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소멸의 재무상태표 상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장부금액	공정가치
자 산		
현 금	500,000	500,000
재고자산	500,000	700,000
건물(순액)	900,000	1,300,000
FVPL금융자산	400,000	300,000
부 채		
사 채	500,000	600,000
순 자 산	1,800,000	2,200,000

<사례 1> (주)존속이 주당 액면금액 10,000원(주당 공정가치 15,000원)인 보통주 100주와 현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주)소멸의 주식은 전부 취득하여 흡수합병한 경우 : (주)소멸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2,200,000원에 상당하는 합병대가 2,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영업권 또는 잉가매수차익(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¹⁰⁾

(차) 현 금	500,000	(대) 사 채	600,000
재고자산	700,000	자 본 금	1,000,000
건 물	1,300,000	현 금	1,200,000
FVPL금융자산	300,000		

한편, (주)소멸은 해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게 되며, 해산을 위한 분개는 흡수합병의 조건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차) 사 채	500,000	(대) 현 금	500,000
자 본	1,800,000	재고자산	500,000
		건 물	900,000
		FVPL금융자산	400,000

<사례 2> (주)존속이 <사례 1>의 보통주 100주와 현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주)소멸의 주식을 취득하여 흡수합병한 경우 : 합병대가는 2,500,000원으로 (주)소멸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2,200,000원보다 크므로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차) 현 금	500,000	(대) 사 채	600,000
재고자산	700,000	자 본 금	1,000,000
건 물	1,300,000	현 금	1,500,000
FVPL금융자산	300,000		
영 업 권	300,000		

<사례 3> (주)존속이 <사례 1>의 보통주 100주만을 지급하고 (주)소멸의 주식을 취득하여 흡수합병한 경우 : 합병대가는 1,000,000원으로 (주)소멸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2,200,000원보다 작으므로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으로 계상한다.¹¹⁾

(차) 현 금	500,000	(대) 사 채	600,000
재고자산	700,000	자 본 금	1,000,000
건 물	1,300,000	합병차익	1,200,000
FVPL금융자산	300,000		

매수법을 적용할 경우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계상하게 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당시 합병회계준칙에서는 향후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었다.

나. 지분풀링법

지분풀링법은 합병을 두 개의 사업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자원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것일 뿐 영업활동의 실질에는 변화가 없는 거래로 파악한다. 따라서 결합된 후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이익잉여금이 결합 전 기업들 각각의 장부금액을 합한 금액과 같아야 한다고 본다(이만우 1998) 지분풀링법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본 연구의 사례가 발생한 당시의 합병회계준칙을 적용한 회계처리이다. 한편,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합병대가 역시 합병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수법 사례 1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차) 현 금	500,000	(대) 사 채	600,000
재고자산	700,000	자 본 금	1,000,000
건 물	1,300,000	자본잉여금	500,000
FVPL금융자산	300,000	현 금	1,200,000
영 업 권	500,000		

- 11)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합병대가가 작은 경우 그 차이를 잉가매수차익으로 계상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1998년 당시 적용된 합병회계준칙에서는 동 금액을 기타의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합병차익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행 회계기준 적용시 위 매수법 사례 3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차) 현 금	500,000	(대) 사 채	600,000
재고자산	700,000	자 본 금	1,000,000
건 물	1,300,000	자본잉여금	500,000
FVPL금융자산	300,000	잉가매수차익	700,000

[지분풀링법 사례]

(주)존속은 (주)소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존속과 (주)소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주)존속	(주)소멸	합계
자산총액	300,000	180,000	480,000
부채총액	100,000	90,000	190,000
순자산	200,000	90,000	290,000
자본금(주당 액면금액 10,000원)	150,000	40,000	190,000
자본잉여금	30,000	30,000	60,000
이익잉여금	20,000	20,000	40,000
자본총액	200,000	90,000	290,000

<사례 1> (주)존속이 (주)소멸의 발행주식 액면총액과 같은 금액의 보통주를 발행하여 (주)소멸의 주식을 취득하여 흡수합병한 경우 : (주)소멸의 장부잔액은 그대로 (주)존속에 승계되며, (주)존속은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차) 자산총액	180,000	(대) 부채총액	90,000
		자본잉여금(소멸)	30,000
		이익잉여금(소멸)	20,000
		자본금(존속)	40,000

한편, (주)소멸은 해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게 되며, 해산을 위한 분개는 흡수합병의 조건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차) 부채총액	90,000	(대) 자산총액	180,000
자 본 금	40,000		
자본잉여금	30,000		
이익잉여금	20,000		

<사례 2> (주)존속이 보통주 7주를 발행하여 (주)소멸의 주식을 취득하여 흡수합병한 경우 : 이 때 소멸하는 (주)소멸의 자본금과 (주)존속의 증가된 자본금의 차이는 (주)소멸의 자본잉여금과 우선 상계처리하게 된다.

(차) 자산총액	180,000	(대) 부채총액	90,000
		이익잉여금(소멸)	20,000
		자본금(존속) ¹²⁾	70,000

<사례 3> (주)존속이 보통주 11주를 발행하여 (주)소멸의 주식을 취득하여 흡수합병한 경우 : 이 경우 소멸하는 (주)소멸의 자본금과 (주)존속의 증가된 자본금의 차이는 (주)소멸의 자본잉여금과 우선 상계처리하더라도 잔액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주)존속의 자본잉여금으로 보충을 하고 그럼에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주)소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한다. 이후에도 잔액이 남게 되면 (주)존속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해야 한다.

(차) 자산총액	180,000	(대) 부채총액	90,000
자본잉여금(존속)	30,000	이익잉여금(소멸) ¹³⁾	10,000
		자본금(존속)	110,000
<사례 4> (주)존속이 보통주 2주를 발행하여 (주)소멸의 주식을 취득하여 흡수합병한 경우 : 이 경우 소멸하는 (주)소멸의 자본총액과 (주)존속의 증가된 자본총액의 차이는 (주)존속의 자본잉여금을 구성하게 된다.			
(차) 자산총액	180,000	(대) 부채총액	90,000
		자본잉여금(소멸)	30,000
		이익잉여금(소멸)	20,000
		자본금(존속)	20,000
		자본잉여금(존속)	20,000

그러나 이러한 지분풀링법의 방식은 1986년에 제정된 합병회계준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기업인수, 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합병회계는 기본적으로 매수법의 관점에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합병을 합병당사자 간의 교환거래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효성의 합병에 적용된 합병회계준칙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1986년 12월 16일에 ‘기업회계에 관한 준칙 3-920 합병회계준칙’을 공표하

12) 본 사례에서는 자본금 70,000원만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주)소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보통주 4주의 처리

(차) 자산총액	180,000	(대) 부채총액	90,000
		자본금(존속)	40,000
		자본잉여금(소멸)	30,000
		이익잉여금(소멸)	20,000

2단계 : 추가 발행한 보통주 3주에 해당하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상계

(차) 자본잉여금(소멸)	30,000	(대) 자본금	30,000
---------------	--------	---------	--------

13) (주)존속이 발행한 보통주 자본금 110,000원과 (주)소멸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 40,000원의 차이 70,000원은 (1) (주)소멸의 자본잉여금 30,000원과 상계되고, (2) (주)존속의 자본잉여금 30,000원과 상계된 후 (3) (주)소멸의 이익잉여금 10,000원과 상계된다. 따라서 합병일 현재 (주)소멸의 이익잉여금 20,000원 중 상계된 10,000원을 제외한 잔액 10,000원만이 승계된다.

었다. 합병회계준칙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타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즉, 원칙적으로는 합병회계처리에 매수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는 지분풀링법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실무적으로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합병시에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이만우 1998).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도 당시 우리나라의 합병 거래 중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장부금액으로 승계한 비율이 88%,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한 비율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안병선 1995).

한편, 합병대가에 대해서는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회사 주식의 액면총액과 교부금 등으로 정하고 있어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도 합병대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¹⁵⁾ 즉,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합병대가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과도한 청산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금액으로 승계하게 되는 실무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박성배 등 1999).

영업권에 대해서는 합병회계준칙에서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영업권은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¹⁶⁾ 즉, 영업권은 단순히 거래에서 정해진 합병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이로 정해진 것이다. 반면, 합병대가가 순자산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⁷⁾ 당시 기업회계기준에서 합병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었다. 영업권은 합병 후 상각을 통해 비용화가 가능하나 합병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당시의 회계처리는 동일한 합병거래에서 발생한 항목을 하나는 이익잉여금, 하나는 자본잉여금에 반영되도록 함으로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박성배 등 1999). 이를 토대로 한다면 효성 합병 사례에서 합병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14) 합병회계준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

15) 합병회계준칙 제3조 제5호

16) 합병회계준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

17) 합병회계준칙 제6조 제2항

〈표 4〉 효성의 효성물산 합병회계

(단위 : 백만원)

Panel A 합병일의 회계처리			
(차) 자 산	889,841	(대) 부 채	1,023,588
자본조정 ¹⁸⁾	758	자 본 금	3,781
영 업 권	136,770		
Panel B 영업권 상각 회계처리			
(차) 특별손실	136,770	(대) 영업권	136,770
(영업권상각)			

위 <표 4> Panel A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 1,368억원을 효성은 1998년 중에 전액 상각처리하고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다. 이는 당시 합병회계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5년 이내의 기간에 균등상각한다는 규정을 확대하여 전액 당기비용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회계기준 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합병회계준칙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과 이로 인한 경영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허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9년 3월 25일에 합병회계준칙을 개선하여 공표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영자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남아 있었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영업권

가. 매수원가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9-1)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기간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그 범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18) 합병 당시 효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승계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당시 합병회계준칙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병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합병차익, 처분손실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기주식을 해당 기간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장주식은 시가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이익은 합병차익, 평가손실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서 영업권의 처리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종전의 회계처리준칙의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 K-IFRS에서는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상각 대신 매 결산기에 손상검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12.32 (중략)

한편,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B63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하거나 부담한 부채에 대한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영업권은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는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이처럼 영업권을 인식한 후 후속 회계처리방식은 회계기준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나, 영업권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대가가 초과할 경우 그 차이로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회계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순자산 가액과 합병대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선되어 왔다.

3. 효성의 세무조사 추정세액

2013년 중 있었던 효성의 세무조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효성이 효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인식하였던 자산 중 감가상각과 매출원가로 계상하면서 손금으로 계상했던 자산가액 중 4,703억원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정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그 원인은 해당 자산이 효성물산이 분식회계를 통해 계상한 가공자산이었기 때문에 이를 합병을 통해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가공자산에 대한 손금 산입은 부당하다는 논지였다. 또한 이에 대해 부당하게 조세를 경감시키기 위한 포탈 행위로 보았다.

관련하여 1998년 합병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책적으로 효성은 효성물산을 합병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다음에 제시한 저서의 내용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살리려면 다 살리고 죽이려면 다 죽여야 합니다.

바스프(효성BASF)를 먼저 정리하고 효성물산은 동양나이론이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그룹 자체는 살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¹⁹⁾

이외에 한화그룹과 효성그룹 오너 경영자는 '뜨거운 가슴'으로 묘사했다.²⁰⁾

효성의 경우 IMF로 자금흐름이 막히자 조석래 회장이 이행장에게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 때 이행장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조회장이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기거하며 비상경영을 독려토록 종용했다. 실제로 조회장이 야전침대를 갖다 놓고 한달간 회사에서 침식하며 바스프(BASF) 매각을 결정하고 효성물산과 동양나이론 합병을 결단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효성물산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가 비율을 적용해 합병 대가는 액면가 약 38억원, 시가 약 67억원 상당의 효성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즉, 순부채를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하는 상황이었다. 관련 회계처리는 앞선 <표 4>처럼 수행이 되었으나, 만일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효성물산의 가공자산 4,703억 원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다면 합병 당시 4,195억원의 자산에서 1조 239억원의 부채를 차감한 6,044억원의 순부채 상태였을 것이다. 이 중 실제 합병회계에서처럼 이연부채를 승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 6,041억원의 순부채를 인수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합병회계를 수행하였다면, 다음 <표 5>와 같은 회계처리가 나타나게 된다.

<표 5> 효성의 효성물산 합병회계(가공자산 제거 후)

(단위 : 백만원)

Panel A 합병일의 회계처리			
(차) 자 산	419,541	(대) 부 채	1,023,588
자본조정	758	자본금	3,781
영 업 권	607,070		
Panel B 영업권 상각 회계처리			
(차) 특별손실	607,070	(대) 영업권	607,070
(영업권상각)			

19) 이관우, 장미와 훈장, 278p

20)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mytalk.kr>)

즉, 조세포탈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가공자산이 제거된 만큼 영업권이 추가로 계상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상각을 통해 비용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당시에 가공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졌다면 하더라도 상장주식의 주가가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합병 당시 주가비율이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합병대가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당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손금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한다.²¹⁾ 또한, 당시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자산, 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²²⁾ 기업이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금액에 해당하며, 동 사례에서는 영업권이 아닌 다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매출원가로 계상되었을 뿐 비용화된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나타난 법인세 추정세액은 당시 모호한 합병회계에 대한 회계기준과 영업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세법 상의 이슈가 겹쳐지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가공자산과 관련하여 회계적으로는 효성물산이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등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효성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여 합병 이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는 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효성물산의 상황을 본다면 해당 자산은 경제적 실질로는 종합무역상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지사의 고객 리스트 및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합무역상사로서 다양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회계기준 상 이러한 영업망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효성물산이 보유하고 있었던 영업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합병 이후 효성의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6〉 효성의 합병전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매출액	4,113,576	3,908,212	3,533,296	1,575,847
매출액 증가율	5.25%	10.61%	124.22%	
영업이익	313,080	416,055	328,697	191,612
세전순이익	71,758	89,371	114,930	(93,902)
당기순이익	54,742	51,145	92,369	(96,851)

21)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22)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위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합병 이후 효성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역시 합병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효성의 손익 정보와 관련하여 효성물산의 사업부문인 무역 부문의 합병 전후 재무정보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합병 이후 효성의 무역부문 매출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 말에는 효성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이 약 24%에 달하였다. 또한 영업손익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표 7> 효성의 무역부문 합병전후 매출액 구조 및 영업손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수출	971,257	820,790	798,910	69,544
내수	11,117	35,774	29,609	1,175
합계	982,374	856,564	828,519	70,719
증가율	14.69%	3.38%	1071.56%	
효성 총매출액 대비 비중	23.88%	21.92%	23.45%	4.49%
영업손익	5,625	2,893	3,314	*

* 1998년 사업보고서 상 정보 없음

이를 바탕으로 1998년 합병 당시 효성의 순부채를 인수하면서 급증하였던 부채 역시 지속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재무구조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다음의 <표 8>은 효성의 합병 전후 재무상태표 및 이자비용의 구조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합병으로 인해 효성의 부채는 1997년 말 기준 1조 5,517억원에서 1998년 말 3조 5,951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이 증가액 중 약 1조 236억원은 효성물산으로부터 승계한 부채였다. 그러나 그 이후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말에는 약 2조 9,243억원으로 감소하면서 부채비율도 161%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부채 중에서 이자부담부채의 비중이 합병 당시 79%에 달하였으나, 2001년 말에는 71% 수준인 약 2조 728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이자비용의 부담도 감소하였다. 또한 이자부담부채에서 유동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합병 당시에는 69% 수준이었으나 2001년 말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부채의 만기구조 역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8〉 효성의 합병전후 재무구조 변화

(단위 : 백만원)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부채 총계	2,924,259	2,980,053	3,079,377	3,595,906
부채 증가율	-1.68%	-4.73%	-21.68%	
단기차입금	594,184	770,125	960,695	1,399,749
유동성장기부채	434,576	551,917	363,523	558,734
사채(순액)	683,468	409,903	464,544	449,528
전환사채(순액)	—	—	19,376	18,049
신주인수권부사채(순액)	—	37,042	33,950	—
장기차입금	360,618	339,190	370,863	399,536
이자부담부채 합계	2,072,846	2,108,176	2,212,950	2,825,596
증가율	-1.87%	-3.23%	-14.36%	
이자부담부채의 비중	70.88%	70.74%	71.86%	78.58%
유동성 이자부담부채	1,028,760	1,322,042	1,324,218	1,958,483
비중	49.63%	62.71%	59.84%	69.31%
비유동성 이자부담부채	1,044,086	786,134	888,732	867,113
비중	50.37%	37.29%	40.16%	30.69%
이자비용	206,521	243,615	314,146	173,958
부담이자율	9.96%	11.56%	14.20%	6.16%
자산 총계	4,743,062	4,701,205	5,513,088	4,903,791
자본 총계	1,818,803	1,721,152	2,433,711	1,307,886
부채비율	160.78%	173.14%	126.53%	274.9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합병 당시에 효성물산의 순부채는 효성에 큰 부담이 되었으나, 이후에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로 미루어 볼 때 효성물산이 보유하고 있었던 영업망이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회계적으로는 분식회계를 통한 가공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효성물산이 보유하고 있었던 영업망 자산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영업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법에서 해당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를 전액 부인하는 것은 구조조정 당시의 긴박성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조세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후 1999년에 이루어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정과 1998년 말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영업권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었으나, 본 사례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사후적

개정이다. 향후 소송의 결과는 합병과 관련하여 영업권 회계처리와 그 과세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회계기준과 세법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공시한 사례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사례 중 합병회계와 관련된 사례를 회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세심판과 소송내역을 참고하여 세무조사 추징세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파악하고 해당 사례의 합병회계처리와 당시 회계기준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과거 합병회계에 대한 기준과 영업권과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본 사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른 세금 추징 사례로 추징세액 규모도 엄청나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불복절차가 2014년부터 진행 중이다. 법원의 1심 소송의 결과가 7년 만에 선고되었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항소를 함으로써 2심이 진행 중이다. 치열한 소송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그 결과가 합병에 대한 회계와 세법의 이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이 계상한 1,368억원의 영업권 외에 부실자산이었던 4,703억원 상당의 자산과 관련한 이슈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회계적으로는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감가상각 처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합병 전후 효성의 손익 및 재무상황을 분석했을 때 효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영업망 자산이 영업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영업권상각비의 기간배분 이슈는 존재하나, 결국 5년 이내의 기간에 전액 비용화가 되어 실제 기업이 계상한 감가상각비 및 매출원가의 효과와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세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나, 당시의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추징세액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정적인 자료와 당시의 기업 공시자료만으로 분석을 진행했기에 일부 금액에 있어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징세액의 규모가 큰 사례를 놓고 회계학적으로 분석하고 세법과의 괴리를 지적한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합병회계와 영업권 과세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도 공헌점이 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한 활발한 추가연구도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권중. 2004. 영업권 평가에 대한 회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3권 : 167-201.
- 김주택. 1999. 기업합병회계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제12권 : 139-159.
- 김진수·황국재. 2001.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김현동. 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 71-105.
- 노직수. 2004.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영업권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4호 : 1551-1567.
- 문승석. 2016. 기업합병 영업권 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제8권 제1호 : 35-52.
- 박성배·윤태화·오문석. 1999. 합병회계준칙 및 합병과세제도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세무학연구 제13호 : 347-371.
- 박수금. 2004. 정책논단 : 영업권 평가 및 과세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제6권 제2호 : 119-144.
- 신현걸·정재연. 2005.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현황분석을 통한 합병회계 및 합병세제의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4권 : 105-128.
- 신현걸. 2004.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및 관련 세법 규정의 문제점.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 1-23.
- 안병선. 1995.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광재. 1998. 합병회계준칙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7권 제2호 : 177-205.
- 이만우. 1998. 「고급회계」, 박영사
- 이우택. 2003. 영업권회계의 주요 쟁점과 해결과제에 관한 연구-최근의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0권 제1호 : 157-191.
- 이중교. 2020.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 두 41463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6권 제1호 : 181-214.
- 조문균. 2008. 영업권의 과세문제에 관한 소고 : 합병시 과세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8권 : 43-71.
- 채병완. 2004. 기업합병에 따른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권 : 217-237.
- Gynther, R. S. 1969. Some "conceptualizing" on goodwill. *The Accounting Review* 44(2) : 247-255.

Analysis of Merger Accounting and Taxation through the Case of Tax Penalties on Restructuring of General Trading Companies

Manwoo Lee* · Junyong Shim** · Yongsuk Yu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related to merger accounting in terms of accounting and corporate taxation using the case in which the amount of tax penalty collected from tax investigations disclo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DART system in 1999 was the largest. Specifically, in relation to the Hyosung T&C merger case of Hyosung, it focuses on examining the accounting treatment of the merger in detail through the contents of the merger accounting rules and corporate tax law at the time and analyzing the issues.

Hyosung T&C, which was merged with Hyosung, was in a state of complete capital encroachment at the time and had a net debt of about KRW 134 billion. In this case, goodwill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ideration for the merger and the net asset value of the merged corporation was KRW 136.8 billion on book. Nevertheless, excluding the processed assets due to accounting fraud, which became a problem during the tax investigation process, it can be seen that the actual net debt was about KRW 604.4 billion.

However, after the merger, Hyosung's financial ratio continued to improve. The debt, which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merger in 1998, continued to decrease, and both sales and operating profit increas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overall sales increased by about 16% compared to the time of the merger, and in the trade area related to Hyosung T&C, sales grew by about 19% in three years compared to the time of the merger, and operating profit improved significantly. This means that although a policy merger took place in 1998, the synergy effect of the merger was very large as a result. In this process, it seems that the sales network such as assets and customer information of overseas branches owned by Hyosung T&C before the restructuring in the aftermath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played a major role. However, there was no way to present these intangible assets o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ccording to accounting standards. In reality, it is judge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tangible asset called a business network.

* Professor, Korea University, leemm@korea.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jyshim@mju.ac.kr, 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Hannam University, hwantasi@hnu.kr, Co-author

From this point of view,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corporate tax law should deny the amortization cost because the portion of the business network was reflected as a tangible asset in accounting through the merger accounting, but is actually an intangible asset that can be recognized during the merger proces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is the first time to analyze the gap between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 laws in relation to the huge amount of additional tax penalty revealed during the tax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disclosures.

〈Key words〉 merger, goodwill, tax penalty, the purchase method